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 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원금 수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이하 “방과후 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 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처리
		1. 공통과정 지원금	
		2. 방과후 과정 지원금	
		3.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2. 방과후 과정 운영 보조금 수입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 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교원 급여 등 인건비(방과후 과정 관련 인건비는 제외한다)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4. 자본 보조금 수입		교사(校舍) 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급식비·간식비(방과후 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는 제외한다)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2. 수익자 부담 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수입	
1. 입학금	
2. 교육과정 수업료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납부받은 금액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방과후 과정비 수입	
1. 방과후 교육·돌봄비	방과후 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납부받은 수익자부담금
2. 방과후 특성화비	방과후 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수입	
1. 일반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 과정 또는 아침·저녁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 부담 수입	
1. 현장체험 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 이용비	통학차량 이용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구입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3. 설치·경영자 및 민간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설치·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법인 법정부담금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전입금
2. 법인 이전수입	법인이 사립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3. 그 밖의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2. 민간 이전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기부·후원금으로 처리
1. 민간 이전수입	
4. 차입금 수입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수입	

		1. 단기차입금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 이전수입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 이전수입		
		1. 건축적립금 이전수입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2. 그 밖의 적립금 이전수입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하는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6.	행정활동 수입		
	1. 지난연도 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납부된 수입
	2.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3. 그 밖의 행정활동 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만기 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수입, 교생실습비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 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1. 기부·후원금 수입		
		1. 기부·후원금 수입	
8.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금액
		2. 정산대상 재원 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 재원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비고

1. 관·항은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항·목에 따른다.